

자 체 감 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1년 「건설도시국」 실국 감사 —

2021. 9.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천원, 명)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시 정	주 의	권 고	회 수	금액	감 액	금액	추 징	금액
계		6건	3	3	0	1	226	-	-	-	-
1	○○○○과	문화재청 사전협의절차 미이행		1							
2	○○○○과	○○○ 건설공사 시행 부적정		1							
3	○○○○○○과	공공기관 구축 ○○○○ 유 지 · 관 리 소 출	1								
4	○○○○○○과	국도○○호선~○○시 연결도로 개설공사 ○○○○ 시공 부적정	1								
5	○○○○과	○○단지 기업 지속 성장 역량강화사업 지출 부적정		1							
6	○○○○○○과	보조금 정산시 보조비율 미준수	1			1	226				

2. 처분요구일람표

1. 문 화 재 청 사 전 협 의 절 차 미 이 행 (주의) 4
2. ○ ○ ○ 건 설 공 사 시 행 부 적 정 (주의) 7
3. 공 공 기 관 구 축 ○ ○ ○ ○ 유 지 · 관 리 소 홀 (주의) 9
4. 국 도 ○ ○ 호 선 ~ ○ ○ 시 연 결 도 로
개 설 공 사 ○ ○ ○ ○ 시 공 부 적 정 (시정) 12
5. ○○단지 기업 지속성장 역량강화사업 지출 부적정 (주의) 14
6. 보 조 금 정 산 시 보 조 비 율 미 준 수 (시정) 17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문화재청 사전협의절차 미이행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국 □□□□과에서는 【표 1】 「△△~△△간 도로건설공사」 추진현황과 같이 도로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실시설계용역, 공사 발주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1】 「◇◇~◇◇간 도로건설공사」 추진현황

사 업 명	위 치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량	비고
◇◇~●●간 도로건설공사	◇◇시 ◇◇면 ▷▷리 ~ △△군 ●●면 ●●리 (지방도 □□호선)	‘18.12.19. ~ ‘25.11.11. (84개월)	46,004	L=4.46km, B=9.5m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의하면 “누구든지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표 2】 ○○~○○간 도로건설공사 추진경과와 같이 도로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재)□□□□□□□□원에서 실시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2015.2.24.~3.11)결과에 따른 문화재 시굴조사 구간인 ◇◇시 ◇◇면 ●●리 구간에 대하여 ◇◇군 ●●●●과에서 시굴조사 여부 문의(2021. 2.)가 있을 때 까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 ◇◇면 ●●리 구간(종점부) 토공작업을

착수(2020.6.)하였으며 문화재 시굴조사 구간임을 인지하고 난 후에는 긴급히 시굴조사 용역 착수(2021.3.21.) 및 시굴구간 공사 중지 명령(2021.4.6.), 문화재청 사전보고 및 방문 협의(2021.4.12.)를 하였다.

따라서, 문화재 시굴조사 구간인 ◇◇시 ◆◆면 ●●리 구간에 대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표 2] 「증산○○~○○간 도로건설공사」 추진경과

일 자	내 용	비 고
2015.2.24. ~ 3.11.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재)□□□□□□원] ※ 지표조사결과 : ㉞ ◇◇리 3,400㎡, ◆◆ ●●리 2,140㎡ 시굴조사 필요	
2010.7.1. ~ 2015.7.7	실시설계 완료	
2018.12.19.	공사 착공(2019. 9월 실착공)	
2019. 3.14.	사업 감리 착수	
2020.6 ~ 11.	중점부(●●시 문화재 시굴구간) 토공(성토, 보조기층) 작업 착수 및 완료	
2021. 2.	◆◆군청(□□□□과) 시굴조사 여부 문의	
2021. 3. 21.	시굴조사 용역 착수(2021.3 ~ 2022. 3, △△△△△연구원)	
2021. 4. 6.	시굴구간 공사 중지 명령	
2021. 4. 12.	문화재청 사전보고 및 방문협의(■□시, 문화재청)	
2021. 5. 4.	시굴구간 현황 및 경위서 제출(目→문화재청)	
2021. 5. 11.	유존지역 훼손 조치사항 통보(문화재청→㉞) ※ (조치사항) 매장문화재 전문가(2인 이상) 현지조사 실시 : 훼손상황 및 보호방안 검토	
2021. 5. 26.	관계전문가 현장 확인 ※ (검토의견) 해당구간 삭토 및 교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조속히 조사 실시, 재발방지 요망	
2021. 5. 31.	훼손에 대한 추가 조치사항 통보(문화재청→㉞) ※ (조치사항) 해당구간 조속한 시굴조사 실시, 재발방지 요청	道 ○○○실 ㉞㉞요청
2021. 6. 2. 2021. 6. 8.	문화재 시굴허가 신청 및 발굴허가(◇→문화재청)	
2021.6.9. ~ 11	시굴조사	
2021.6.28.	◇◇-㉞㉞간 도로건설공사 내 유적 부분완료 조치 통보 (문화재청→●)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건설공사 시행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간 도로건설공사 외 2건의 공사를 [표 1]과 같이 추진 중에 있다.

[표 1] 공 사 현 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계	도급	관급			
●●~●●간 도로건설공사	도로건설 L=4.46km B=9.5m	34,201	28,824	5,377	2018.12.19~ 2025.11.11.	①①건설(주)	
●●●~●●●간 도로건설공사	도로건설 L=3.1km B=10.5m	30,289	26,286	4,003	2017.03.13~ 2022.03.11.	○○ ①①건설(주)	
●●● ●●도로2 건설공사	도로건설 L=21.1km B=8.0m	152,672	131,604	21,068	2015.12.17~ 2022.01.24.	①① ○○○(주)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왔으며, 이로 인하여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¹⁾하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18년 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도입이 논의되어 왔으며, 64개 현장 시범사업('18.10~'19.4)을 거쳐, 2020년 6월 모든 공공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의무 시행이 결정(건설기술 진흥법 개정)되어 2020년 12월 13일부터 적용 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르면 건설

1) 작업참여비율을 감안시, 주말이 평일보다 중대건설사고 1.2~1.4배 더 발생(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되며, 1.사고·재해의 복구 및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한 경우, 2.날씨·감염병 등 환경조건에 따라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3.교통·환경 등의 문제로 평일 공사 시행이 어려운 경우, 4.공법·공사의 특성상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한 경우, 5.민원, 소송, 보상 문제 등 건설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된 경우, 5.도서·산간벽지 등 낙후지역의 10일 미만의 단기공사로서 짧은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방안(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장은 일요일 공사를 위해 1주전부터 목요일(D-3)까지 발주청에 공문 송부, 발주청은 내부 검토를 거쳐 직전 금요일(D-2)까지 현장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간 도로건설공사, ◆◆◆~◆◆◆간 도로 건설공사의 경우 단순히 연속적인 시공이 필요(터널공사)하다는 사유로 관련법 개정 의도와는 맞지 않게 일요일 건설공사를 매주 승인하였으며, ◇◇◇ ○○도로2 건설공사의 경우 도서지역이라는 사유만으로 기간 관계없이 무한정 일요일 건설 공사를 시행 승인(2020.12.8.)하여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휴식을 보장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공공기관 구축 ○○○○ 유지·관리 소홀
소 관 청 ◆◆◆◆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국 ■■■■■과에서는 경상북도 ■■■■ 및 ■■■■정책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 e-박사’와 ‘경상북도 ◆◆◆◆시스템’ ○○○○를 구축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다.

1. ○○○○ e-박사 ■■■■ 중지 절차 부적정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제5장(폐기)에 따르면 활용도가 낮거나, 조직개편 또는 업무종료 등으로 더 이상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웹사이트를 폐기하여, 운영예산을 절감하고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도록 되어 있고, 웹사이트 폐기 절차는 폐기계획 수립(웹사이트 이용진단, 폐기대상 사이트 선정, 폐기 이행 계획 수립), 폐기 실행(폐기 계획 공지, 데이터 이관 및 폐기), 폐기결과 점검 및 보고(자료 이관 확인 및 폐기결과 점검사항 보고)의 절차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 관리부서인 ○○○○○과에서는 도민들이 이용하는 ◇◇◇◇의 폐기 또는 호스팅 중지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웹사이트 이용진단 등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서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다.

그런데, ○○○○○과에서는 [표1] ‘경상북도 ■■■■ e-박사 ○○○○ 유지 관리 내역’과 같이 2015년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2020년까지 유지보수 용역을 진행한 후 2020. 7월에 구축한 ‘경상북도 ○○○○시스템’ ○○○○ 운용과 향후

개선상황에 따라 ‘○○○ e-박사’의 존치여부를 결정한다는 사유로 도메인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인 2021. 2. 17.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내부 검토 등 아무런 조치 없이 ○○○○ 호스팅을 중지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표2] 경상북도 ○○○ e-박사 ○○○○ 유지 관리 내역

일자	내 용	금 액(천원)	비 고
2015. 7.27.	경상북도 ○○○e박사 ○○○○ 구축 용역 시행	18,000	
2017. 1.12.	2017○○○○ 유지·보수 용역(2017.1.~12.)	2,025	
2017.12.27.	2018○○○○ 유지·보수 용역(2018.1.1.~12.31)	2,160	
2018.10.12.	○○○○ 도메인 사용료 지급(3년)	73	
2018.12.17.	2019○○○○ 유지·보수 용역(2019.1.1.~12.31)	2,160	
2020. 1. 9.	2020○○○○ 유지·보수 용역(2020.1.1.~12.31)	2,160	
2021. 2.17.	○○○e박사 ○○○○ 사용 중지	-	
계		26,578	

2. 경상북도 ○○○○시스템 운영 부적절

「경상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에 따르면 ○○○○는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 공간을 말하고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에 의하면 “도지사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있다.

또한,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에 의하면 도지사는 ○○○○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 주관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시 정보제공자와 주관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과에서는 [표2] ‘경상북도 ○○○○시스템’ ○○○○ 추진현황과 같이 ○○○○를 20,029천원의 예산으로 구축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주

기능인 도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온라인 접수 이외의 주거정책 소개, 임대정보, 자가진단 등의 다른 콘텐츠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한 사실이 있다.

[표] 「경상북도 ○○○○시스템」 홈페이지 구축현황

구 분	구축기간	소요금액(천원)				비고
		계	계약액	도메인 구입	아이핀 이용수수료 등	
경상북도 ○○○○ 시스템 구축용역	‘20.5.14. ~ 7.12.	20,029	18,700	229	1,100	

조치할 사항 ○○○○○과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 ② ○○○○ 폐기 시 관련 절차를 준수하시고, 구축되지 않은 ○○○○시스템 ○○○○ 자료를 현행화 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국도〇〇호선~〇〇시 연결도로 개설공사 〇〇〇〇 시공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〇〇〇〇〇과
 내 용

〇〇〇〇〇과는 국도〇〇호선~〇〇시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표 1]과 같이 추진 중에 있다.

[표 1]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계	도급	관급			
국도〇〇호선~〇〇시 연결도로 개설공사	도로 개설 L=4.62km	21,252	15,281	5,971	2019.04.29.~ 2022.01.27.	(주)〇〇〇 건설	
국도〇〇호선~〇〇시 연결도로 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 1식	1,030	1,030	-	2019.01.19.~ 2021.12.17	(주)〇〇 〇설턴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지침 제56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인은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현장 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도〇〇호선~〇〇시 연결도로 개설공사 시방서에 따르면 〇〇〇〇 시

공 시에는 제방 법면과 매트가 밀착되도록 경사면에 식물뿌리, 돌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정리한 후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에서는 국도○○호선~○○시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목적물이 적정하게 시공되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 하도록 건설사업관리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현장 확인(2021. 7. 9)시 ○○○○ 시공구간 법면의 식물뿌리 등을 적절하게 제거하지 않고 시공²⁾함으로 인하여 ●●●● 안쪽으로 식물이 자라 ●●●● 들뜸으로 인해 ●●●●에서 초화류가 발화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시공한 사실이 있다.

[사진 1] △△△△ 시공 현황



조치할 사항 □□□□□과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② 들뜸 현상이 발생한 구간에 대하여는 지방서에 적합하게 보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2) 150m(670㎡), 시공비 4,500천 원 정도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단지 기업 지속성장 역량강화사업 지출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단지 회원사의 마케팅, 판로지원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하여 [표 1]과 같이 관련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표 1】 ○○단지 기업 지속성장 역량강화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연도	보 조 사업자	사 업 비			주요 내용	비고
			계	도비	자부담		
계			195,805	179,200	16,605		
○○단지 기업 지속 성장 역량강화사업	2018	(사)◇◇◇◇◇	73,590	64,000	9,590	- ◇◇단지 생산품 마케팅 판로지원, 근로환경 개선사업 추진 등	
	2019	◇◇연합회	69,316	64,000	5,316		
	2020	경북협의회	52,899	51,200	1,699		

1.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지출결의서 없이 지출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에 보조금 지출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인 (사)○○○○○○○연합회 경북협의회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표 2]와 같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출하였는데도 보완 등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회계처리가 적정한 것으로 정산완료한 사실이 있다.

【표 2】 지출결의서 미작성 지출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사 업 명	지출결의서 미작성건수(건)	지출금액(원)	비고
계		83	179,200	
2018년	●●단지 기업 지속성장 역량강화사업	58	64,000	
2019년		13	64,000	
2020년		12	51,200	

2. 민간경상보조로 자본적 경비 편성 ·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체 채원 또는 국비 또는 시·도비를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연합회 경북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보조금에 관한 관련 규정에 맞게 예산을 집행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보조사업자인 (사)●●●●●●연합회 경북협의회에 [표 3]과 같이 자본적 경비에 해당하는 회사안내간판, 화장실 개보수 등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101,556천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비목으로 부적정하게 예산 편성하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3】 ◇◇단지 기업 지속성장 역량강화사업 자본적경비 지출현황

연 도	보조사업자	사 업 내 용	사업비(천원)	비 고
계	20개업체		101,556	
2018년	8개업체	- 화장실 및 휴게실 리모델링	23,100	개소당 2~6백만원 지원
2019년	9개업체	- 화장실 리모델링, 현수막 게시대 설치	51,053	
2020년	3개업체	- 회사 안내간판 설치 및 화장실 리모델링	27,403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시 관련 절차 및 예산과목별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토록 보조금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보조금 정산시 보조비율 미준수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는 경상북도 ▷▷▷▷사업 종사자 통합교육을 위해 [표 1]과 같이 관련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표 1】▷▷▷▷사업 종사자 통합교육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연도	보조 사업자	사 업 비			주요 내용	비고
			계	도비	자부담		
○○○○○사업 종사자 통합교육	2020	(사)경상북도 ○○○○○협회	24,000	12,000	12,000	- 도내 ○○○○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자부담이 포함된 보조사업은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해야 한다.

그런데, ○○○○○과에서는 [표 2]와 같이 보조사업을 정산하면서 보조금 집행 대비 미집행된 자부담액 226천원에 대해 보조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226천원의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데도, 시정조치 없이 보조금액을 확정 한 사실이 있다.

【표 2】 보조비율 미준수 현황(자부담 미집행)

(단위 : 천원)

사 업 명	구 분 (보조비율)	사업금액	집 행 내 역			비 고
			실제	정상	반환	
2020 △△△△사업 중사자 통합교육	소계	24,000	452	452	226	
	보조금(50%)	12,000	452	226	226	
	자부담(50%)	12,000	-	226	-	

조치할 사항 □□□□□과장은

① 앞으로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및 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② 부적정하게 정산하여 미 반납된 보조금 226천원에 대하여 회수 조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